

(가칭)서울 #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8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#WithU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·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, 피해 발생시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임
- 나.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서울 #WithU센터
- 소재지 : 미정 (민간시설 임대 예정)
- 시설규모 : 연면적 약 400㎡
- 개소일자 : 2020. 3.(예정)
- 이용대상 :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근무 노동자 및 일반시민
- 근거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 및 3항,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조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20. 3. ~ 2023. 2. 예정)
- 위탁사무 : 서울 #WithU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 : 고충상담원 교육 및 사건 컨설팅 등
 -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: 10인미만 사업장 특별 관리
 -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·홍보
 - 민간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
 - 기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
- 소요예산 : 1,144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 -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57조 제1항(사무의 위탁)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필요성
 - 기존 성희롱 피해 지원의 법적·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, 조직문화·시민의식 개선, 피해자 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
 -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,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

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30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(矯正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조

제2조(시의 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57조

제5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 오부자(☎ 2133-5322)